

## 5. ◆ 중대 재해 사례 ◆

### 고소작업차 운반구에 탑승하여 건물청소작업 중 추락사망

#### 재해 개요

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고소작업차 운반구(바스켓)에 탑승하여 건물 유리창을 물청소하던 중 약 4.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.

#### 재해 사진

<피재자가 고소작업차 운반구에서 물청소작업 중 추락 사망한 상황도>



<피재자가 추락한 지면>



### 재해발생 상황

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건물관리업에서 피재자가 고소작업차 운반구에 탑승하여 건물 유리창을 물청소하던 중 약 4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.

### 재해발생 원인(추정)

- **개인 보호구 미착용**  
피재자가 작업한 장소(고소작업차 고소작업대 운반구)는 높이 2m 이상의 고소장소임에도 불구하고, 안전모 및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
- **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**  
피재자가 작업한 장소(고소작업차 고소작업대 운반구)는 높이 2m 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
- **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 지휘자 미지정**  
고소작업차(고소작업대)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또한,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지휘자 미지정

###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**개인 보호구 착용(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조)**  
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
- **안전대 부착설비 설치(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조)**  
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,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실시
- **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지휘자 지정**  
고소작업차(고소작업대)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조치